

- 201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
 - 파생상품 과세의 주요 논거는 크게 ‘조세원칙의 수립’,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 억제’, ‘세수확대’라고 할 수 있음
- 파생상품 과세 방안은 당초 기대한 세수증대 효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
 - 파생상품에만 제한된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지 않으며 기초자산 거래대금 위축으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파생상품시장의 헤지기능 위축에 따라 현물주식시장과 기타 자본시장의 유동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파생상품 과세는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양한 투자방식, 투자전략, 신상품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함

1. 파생상품 과세안의 연혁 및 핵심 논거

가. 검토배경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졌으며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본 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위원 남길남 Tel: 3771-0687, E-mail: namgn@kcmi.re.kr

- 본고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파생상품 과세안을 살펴보고 주요 논점과 특징을 분석하며 합리적 과세 방안에 대해 고찰함
 - 특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파생상품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함

나. 주요 연혁

- (2004년 세제개편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비과세였으나 2004년 처음으로 양도차익 과세안이 논의
 - 당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 (2009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 제18대 국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됨
 - 2009년 8월,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제기하여 조세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함

- (2012년 총선 공약) 19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총선공약으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내세움
 - 여야 모두 파생상품 거래세를 공약으로 제시함

- (2012년 세법개정안) 2012년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안을 명문화 하였으나 개정에는 실패
 - KOSPI200 선물 거래시 0.001%, KOSPI200 옵션 거래에 대해서는 0.01%를 과세하되 그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 ‘2013년 세법개정안’에도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함

- (2014년 국회 조세소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에 여야가 합의를 함
 - 201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안은 입법화에 성공함

다. 과세안의 핵심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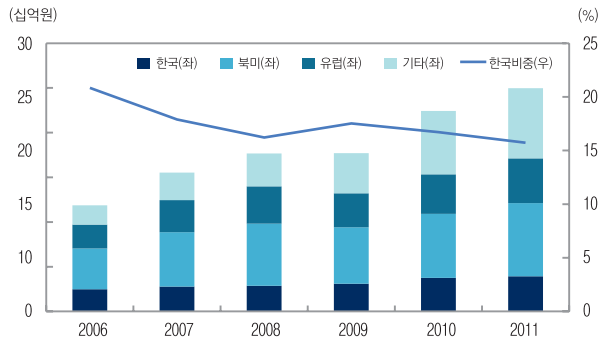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논의) 2004년 양도차익 과세 계획이 시초였으나 그동안의 논의는 거래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양도차익 과세로 귀결됨

- (파생상품 과세의 주요 논거) 파생상품 과세 논거는 크게 '조세원칙의 수립',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 억제', '세수확대'임
 - 또한 과세 찬성론 측에서는 세율조정과 단계적 과세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에 주는 충격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

- (조세원칙 수립)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 상장 주식은 이미 30bp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반하여 파생상품시장은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음
 - 과세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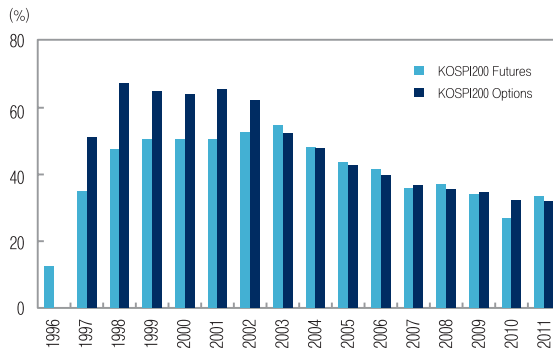
- (투기억제) 한국파생상품시장은 개인의 비중이 과도하고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거래세 등을 통해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
 - 파생상품 과세논의가 본격화된 2012년 전후 한국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세계적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30%를 상회
 - 거래계약수 기준으로 한국은 2011년까지 세계거래량의 16%를 차지하였음

〈그림 1〉 파생상품 거래량 국제비교



자료: FIA

〈그림 2〉 KOSPI200 선물·옵션의 개인투자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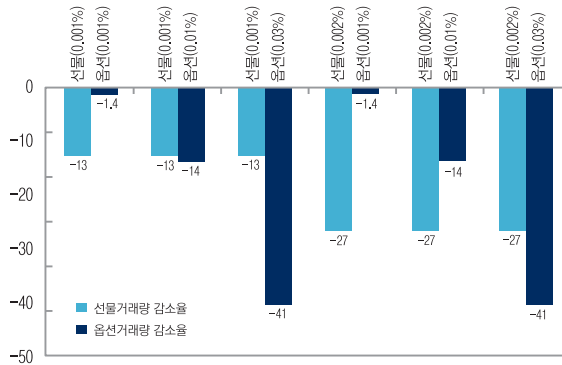


자료: KRX

- (세수확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
 - 국회예산정책처(2012)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거래세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연간 1,400억원 이상으로 추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세율 10% 가정)로 연간 368~480억원의 세수효과 발생 추정

- (제한적 시장충격) 과세로 인한 파생상품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주장
 - 단계적 과세(일정시간 영률 적용)와 탄력세율(시행초기 저율의 세율 적용) 등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음

〈그림 3〉 거래세율별 파생상품 거래량 예상감소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안의 주요 내용

□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과세는 그동안 주로 거래세에 맞추어져 왔으나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은 양도차익 과세안임

□ (과세대상 파생상품)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KOSPI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결정됨

—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0%로 결정함

- 원칙적으로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이지만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 가능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방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구분계산을 할 예정이며 손실액의 차년도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단,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받음

- 납부방식은 연 1회 확정신고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는 제외
- 거래내역은 금융투자업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의무자별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반대거래, 상계, 만기도래 등으로 소멸한 계약에 대해 선물과 옵션으로 구분하여 계좌별로 계산한 다음 관련 수수료를 공제한 합산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선물: 1계약의 양도소득금액은 거래승수를 감안한 계약체결 시점의 약정가격에서 반대거래 또는 만기시의 최종결제가격간의 손익금액으로 계산
- 옵션: 1계약의 양도소득금액은 반대매매와 만기도래로 구분함
 - 반대매매의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감안한 매매차익
 - 만기도래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와 0 중에서 최대값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한 거래승수 반영 금액

3. 파생상품 과세안의 논거 및 쟁점 검토

가. 파생상품 과세의 주요 논거 검토

□ (조세원칙)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당연하지만 거래세나 부분적 양도차익 과세가 아닌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세가 바람직함

- 거래세의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으며 파생상품에만 제한된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합산이 되지 않는 불합리가 존재함
-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포괄하는 자본이득세가 조세원칙에 가장 부합함

□ (투기억제) 금융감독 실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통한 투기억제는 적절하지 않음

- 2011년 이후 투기억제를 위한 다양한 금융감독 조치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크게 감소
 - 시장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거래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투기억제를 위하여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KOSPI200 옵션승수 인상’,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등의 조치가 시행
 -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2011년 5월): 옵션을 매수만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를 면제해주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소액 옵션투자자의 진입요건이 강화됨
 - KOSPI200 옵션승수 인상(2011년 6월): 기존 거래승수인 계약당 10만원을 5배 인상하여 계약당 5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거래가 억제됨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4년 6월): 기본예탁금의 대폭 인상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로 진입 요건이 대폭 강화됨
- 다양한 투기억제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30% 이내로 축소되는 추세임

□ (세수확대) 파생상품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크지 않으며 주식시장과의 동반위축으로 증권거래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큼

- 남길남·이효섭(2012)은 선물거래에 대해 0.1bp 옵션거래에 대해 1bp를 부과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파생상품거래세를 총괄하여 1천1백억원 감소에서 최대 2백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표 1〉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확대 추정

	선물(0.1bp), 옵션(1bp)	선물(1bp), 옵션(10bp)
파생거래세 규모	1천억원	1천1백억원
증권거래세 변화액	▽8백억원 ~ ▽2천1백억원	▽1천7백억원 ~ ▽4천2백억원
합계	▽1천1백억원 ~ 2백억원	6천8백억원 ~ 9천3백억원

자료: 남길남·이효섭(2012)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도 세율이 10%이면 연간 368~480억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시장충격) 거래세 부과는 10% 이상의 거래대금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남길남·이효섭(2012)의 분석에서 KOSPI200 선물(0.1bp), 옵션(1bp)의 파생상품거래세는 선물 22%, 옵션 12%의 거래대금 하락 예상됨

-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인 주식시장과 합산과세가 아닌 파생상품시장만의 구분과세 상황에서는 파생상품의 직접적 거래위축과 주식시장의 간접적 거래감소 가능성이 높음
 - 파생상품의 헤지기능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 대해 차별적 과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효과 추정

변수	선물(0.1bp), 옵션(1bp)		선물(1bp), 옵션(10bp)	
	선물	옵션	선물	옵션
기관투자자	▽14.0%	▽3.9%	▽28.0%	▽7.8%
외국인투자자	▽6.3%	▽7.4%	▽12.6%	▽14.8%
개인투자자	▽1.7%	▽0.5%	▽3.4%	▽1.0%
합계	▽22.0%	▽12.0%	▽44.0%	▽24.0%

자료: 남길남·이효섭(2012)

나. 양도차익 과세안의 주요 쟁점

- (리스크 헤지기능 부정)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안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과세로 인해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의 헤지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
 - 헤지 기능은 파생상품시장을 인위적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과 구별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안은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파생상품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상품들의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거래 등의 양도차익 소득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 과세안은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거래손익과 기초자산의 거래손익을 합산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활용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파생상품의 헤지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시장의 헤지기능이 위축되면 현물주식시장과 기타 자본시장의 유동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
 -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할 유인이 떨어지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기초자산의 거래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과세형평성 훼손) 현 과세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납세자를 개인투자자에 국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원칙이 훼손되는 점임
 - 현 과세안의 근거법은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법인세법의 지배를 받는 기관투자자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과 맺은 조세 조약의 규정을 받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안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중 개인투자자만 제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투자자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 (투자방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또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도 KOSPI200 선물·옵션의 직접투자만 양도차익 과세를 부담
 - 펀드나 파생결합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제외하고 있어 투자방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 KOSPI200 선물·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펀드상품이나 KOSPI200 옵션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주가연계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부담이 없음
 - 세금 부담에 따른 상품간 거래 이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월공제 제한의 문제점) 현 과세안은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장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자본이득세 과세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본이득세의 전면 확대에 부정적 학습효과가 될 수 있음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공제의 제한은 납세자들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손실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3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4. 합리적 파생상품 과세 방안

□ (외국의 파생상품 과세 도입 효과) 외국에서도 파생상품 과세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음

- 미국은 1960년대 초 베트남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내 유로본드시장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거래가 런던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1991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도가 있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 스웨덴은 1984년 증권거래세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당초 정부가 계획한 연간 15억 크로나의 세수증대는 이루지 못하고 평균 연 5,000만 크로나에 그치면서 결국 1991년 폐지함

□ (파생상품 과세안의 평가) 현재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됨

- 현 과세안은 파생상품의 리스크 헤지기능을 부정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만 특정하여 과세함으로써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음
- 이월공제를 제한하여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바람직한 과세 방안)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과세는 전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 조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무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다양한 투자방식, 투자전략, 신상품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함
- 포괄적 자본이득세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급함

참고문헌

남길남·이효섭, 2012, 파생상품거래세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증권담당기자 초청 세미나, 자본
시장연구원

채은동, 201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홍범교·이상엽, 2012,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이상엽, 2014,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